

감사 보고서

제 목 기준 규제에 대한 심사 기능 미흡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기준 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있다.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준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를 정비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는 등 규제 정비 여부는 해당 규제를 운영하는 소관 부처가 1
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에 관한 소관 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감안할 때, 경제단체 등으
로부터 폐지·개선을 건의 받고도 준치되고 있거나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가
커 중앙부처 차원에서 정비하기 곤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규제에는 국민이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이
해 관계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준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규제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기준 규
제의 정비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이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의 기준 규제 심
사 기능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 소관 부처가
2014년 이후 경제단체 또는 규제 개혁신문고를 통하여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하
였으나 수용하지 않고 있는 규제를 대상으로 ① 기준 규제 폐지·개선 건의에
대한 규제의 심사 여부, ② 정비 필요성 있는 규제 준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1) 기준 규제 폐지·개선 건의에 대한 규제의 심사 관련

우선 규제의 기준 규제 심사와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규
제가 논의한 안전을 분류하여 보면, [표 23]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한 총 109
건 중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의결이 101건, 기준 규제의 필요
성 심사에 관한 의결은 1건¹⁾으로 나타났다.

[표 23] 규제의 필요성 심의 인건 분석 실적
(단위: 회, 건)

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및 사무실 확보 기준 요건 완화 등 8건의 규제를 심사하여 개선권고하였고,
이 중 7건의 규제가 개선이 원료됨

점검 결과, 불수용으로 1차 답변한 건의 7,603건과, 중장기점토로 1차 답변한 후 2차 답변 시 불수용으로 답변한 건의 1,134건 등 계 8,737건 중 국조실은 416건(중복 건의 제외)에 대해 소관 기관에 재점토하도록 소명을 요청하였고, 소관 부처는 [표 25]와 같이 183건(44.0%)에 대해 여전히 규제를 존치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이 중 국조실이 규제위에 안전으로 상정한 것은 8건에 그쳤다.

관사 : 장희진 · 신현규
제작 : 200전 총 100회
연출 : 안전한
극장 : 아트홀에서
제작국 : 한국극
제작년도 : 2007년

卷之三

[부 24] 규제개혁선언서 | 차급별 연령(2016년 5월 1일 기준)

계	수용	일부 수용	기조차	■ 수용	증상 검토
13,423	1,042	560	1,622	7,603	2,656

주: 중복 건의 포함
자료: 구조식 제출자료

그리고 불수용의 취지로 답변한 건의 7,603건과 중장기검토로 답변한 건의 7,656건 등 총 10,259건에 대해 국가와 식사 및 청비 실태를 점검하였다.

2) 규제개혁신공고 통하여 접수된 규제 개선 건수는 2014년 이후 총 13,000여 건으로 경제단체·전의회(2013년 이후 49,021건)·수협·밀가지(2013년 이후 16,952건) 등 다른 규제개혁제도를 통하여 접수된 건수로 차등화를 통해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표 25] 규제개혁신문고 소명 요청 고지의 후속조치 현황

(단위: 건, %)						
소명 요청 건수	구체 조치			대안 마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416	183	44.0	139	33.4	86	20.7
					8	1.9

지금: 국조신지금

- 1 -

(2) 규제 위 십사 없이 준치되고 있는 과제의 정비 필요성 관련
(1) 차관 간부에게 의견서, 각처 국체의 괴오성을 신사하는 시정에 부응하여

심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기간(2016. 5. 23 ~ 6. 21) 중 국가의 실사를 거치지 않은 차 조치되고 있는 전의과제의

개선 필요성 여부를 점검하였다.

(가) 부수용 과정에 대한 이론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우선, [별표 1]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주요 규제”와 같이 종업부처가 정비

구원 규제 18건을 선별하여 규제 전문가(한국규제학회 소속)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기초로 정비

설문조사 결과, [별표 2] “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6 등의 규정에 따라 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지체에 대해서는 100대에 한해서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기지체 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수량 제한’ 등 규제 5건의 경우 평가자 전원이 정비 시 문제점보다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

이에 설문조사 결과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인원이 많은 상위 9 건의 규제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 면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정비 필요성을 심층 분석한 결과, ‘방송통신기지체 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수량 제한’ 등 아래 2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⁴⁾

정비 필요성이 있는 규제 사례

(사례 1) 방송통신기지체 등의 적합성 평가 면제수량 제한

■ 「전파법」 제5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의 규정에 따르면 제품 및 방송통신서비스의 연구와 기술 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지체는 100대에 한하여 적합성 평가를 면제 — 그런데 「방송통신기지체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지체 적합성 평가 면제 신청 시 시험연구회서, 시유서, 수익계약서 등 면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입 품의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적합성 평가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현재 수령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국가통합인증(KO마크)을 사용하는 8대 부지의 19대 범정의무인증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유일하게 방송통신기지체의 적합성 평가에 100대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음

— 그런데도 미래부는 방송통신기지체 적합성 평가 면제수량을 확장하여 면제 단체의 간의에 예외규정이 있다는 시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체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에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체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르면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은 코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정비 시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보다 많았음

4) 각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4. 개별 규제운용의 적정성 분야' 참고

- 그런데 「식품위생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객실을 설치할 수 있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은 객실 설치와 주류 판매가 불가능하고 일반음식점에 비해 시설규모도 적어 규제 완화가 필요

- 그런데도 식약처는 군사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관합동구제가 선추진단의 건의에 「건축법」상 저촉된다는 사유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

한편, 규제 정비 필요성이 크다고 응답한 인원이 많은 규제 9건 중 ‘안전상 비’의 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 등 2건의 규제⁵⁾는 규제 소관 부처가 경제관제청 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을 발표하는 등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나)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가) 창과 같이 소관 부처가 폐지·개선 건의에도 수용하지 않은 규제 중 일부는 정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규제에 대한 규제 위의 바람직한 관리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산업 분야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있는 신산업투자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2016년 4월 말 현재 각 부처가 발굴·접수한 규제 개선 과제 중 불수용하기로 결정한 151건에 대해 분과위원회를 13회, 총괄위원회를 1회 개최하여 [표 26]과 같이 이 중 8건은 해당 부처의 의견대로 규제존치를 인정하였고, 136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블수용 의견을 유지하자 규제 개혁조정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그중 5건은 개선안을 추가로 확정⁶⁾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5)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품목 제한」 규제는 2016. 7. 5. 경제관제청 관회의에서 개선계획이 발표되었고, 「액체산업 중차금지」 규제는 국토부가 2016. 8. 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규제를 완화

6) 이 중 2건은 미해결과제로 관리

[표 26]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과제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개선방안 확정		개선방안 미확정	개선방안 미제공	추가 논의
	견의수용	대안마련			
신사업 투자위원회	116	20	4	3	
분과위원회		8	-		
총괄위원회			4	3	
국제기획조정회의 원인 확장				개선방안 확정 5건 미해결과제 2건	

자료: 국조실

이처럼 소관 부처가 개선 전의를 불수용한 신산업 규제의 경우 신산업투자 위원회가 규제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대부분 개선되고 있었다. 반면 (1)항과 같이 신산업 외 분야의 규제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가 기준 규제 폐지·개선 전의를 불수용하더라도 규개위 등이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문제점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1조의 규정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설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규개위 심사 등 사무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규개위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규개위는 국민이 규제 정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여 이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은 2015. 1. 23. 규개위에 보고한 “규제신문고 운영 개선 방안”에서 파급력이 크지만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는 규개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개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3. 13.에도 규개위에 “2015년 행정규제 업무 관리방안- 행정규제 업무관리 기준(안)”을 보고하면서 경제·사회적 파급도가 높고 해결이 시급한 중점분야 규제 전의과제(규제기요령7)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가 불수용하는 경우 규개위의 심의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분석결과 (나)항’과 같이 소관 부처가 개선 전의를 불수용한 신산업 규제의 경우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심의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규제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규제 소관 부처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과제 중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이해관계인·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다 는 의견을 제시한 과제에 대해 규개위가 직권으로 그 필요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기준 규제 심사 기준8) 등을 수립·시행하여 규개위의 기준 규제 심사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조실은 위와 같이 규개위가 기준 규제를 심사한다는 기본 방침만 정해 놓고, 「규제개혁 매뉴얼」(2016년 4월 국조실), 기준 규제 정비 관련 지침 등에 규개위에 안건을 상정하는 기준, 기준 규제 심사 시 안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심사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분석결과 (1), (2)항’과 같이, ① 규개위는 소관 부처가 개선의 를 불수용한 규제에 대해 사실상 심사를 하지 않고 있고, ② 소관 부처가 개선

7) 경제단체가 전의한 과제 중 비효율적인 규제를 일거에 제거하는 규제 개선 방식
8)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시에는 규제 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일률규제 심사 시에는 일률규제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전의를 볼수용한 규제 중 일부는 개선 필요성이 있는데도 규개위에서 논의가 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정비 필요성이 있는 규제가 그대로 존치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파급력이 크거나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규제는 전(全) 정

부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기존 규제 심사 기능이 미흡하다는 사항과 관련하여 국조실은 기존 규제 심사 시 개별 규제를 규개위에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존 규제에 대해 일괄하여 상정하고 있으며, 실제 2015년의 경우 제347회 본회의(2015. 5. 22.)에서 “2015년도 규제 정비계획”을 심의하여 969건의 기존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고, 제361회 본회의(2015. 12. 24.)에서도 “기술규제 개선방안”을 의결하여 17건의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과위 원회에서 일몰규제 960건을 심사한 바 있어 기존 규제 심사 실적이 저조하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기존 규제의 심사는 국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에 따라 규개위가 직권으로 특정한 기존 규제의 개선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기능이다.

그런데 국조실의 답변에서 규개위의 기존 규제 심사 실적의 근거로 제시한 규제 정비계획 또는 기술규제 개선 등의 심의는 각 부처가 수립한 규제정비계획을 보고받아 수정·확정하는 것이지 규개위가 개별 규제에 대해 유지 필요성과

개선 필요성 등을 직권으로 분석하여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규제정비계획 심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는 것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하는 별개의 업무이다.

일몰규제 심사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로,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국민, 이해관계인 등의 개선 의견을 받아 기존 규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문가 설문조사 대상 주요 규제

[별표 1]

연번	규제 내용	건의 경로	건의 일자	답변 내용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수금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시설상 불수용
2	군사시설 내 휴게음식점 및 체리필 영업 제한	민관협동구제기선추진단	2014년	불수용
3	인천상부의 악품 악국 의 판매 품목 제한	민관협동구제기선추진단	2015. 10. 15.	불수용
4	허수온도차에너지 등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정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5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면제수령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6	근로조건 변경경우에 대한 이중 규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7	전기공사 및 정부통신공사 분리별주체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8	영리법인형 자회사에 대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정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4년	불수용
9	건설공사 보험료 시속장산에 관한 규제	규제기획신문고	2014. 6. 11.	일부 수용
10	심이륜버스 운행면허자격 등에 관한 규제	규제기획신문고	2015. 1. 30.	불수용
11	택배산업 중치금지 등에 관한 규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6. 3. 22.	시설상 불수용
12	경제적 셧다운제 및 선택적 셧다운제	규제기획신문고	2014. 4. 8.	일부 수용
13	개별제한구역 내 폐출시 옹도법정 제한	규제기획신문고	2014. 4. 16.	일부 수용
14	조제약의 토비비파송 제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에 서면 간의	2014. 4. 24.	일부 수용
15	인천상부의 악품의 판매 제한	신산업투자위원회	2015. 5. 13.	일부 수용
16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기획신문고	2014. 10. 22.	미답변
17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업종 제한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12. 21.	불수용
18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경제단체 건의과제	2015. 7. 9.	시설상 불수용

주요 규제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단위: 점, 명)

[별표 2]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주: 1. 1차 설문은 규제 전문가 10명이 응답하였고, 2차 설문은 9명이 응답

.., 1차 설문 시 규제별 규제개혁 필요성 및 문제점 점수 총점은 300점(3개 문항 × 10점×10점)이고, 2차 설문 시 규제별 규제개혁 필요성 및 문제점 점수 총점은

자료: 한국국제학회 제출자료 재구성
270점(3개 문항X9명X10점)임

1
C
T

감사 보통 원록

제 목 신설·강화 규제 등록 누락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심사를 거쳐 신설·강화된 규제를 규제와에 등록하도록 규제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내용·근거·처리기관 등을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 등으로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제와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체 없이 규제와에 등록하게 하거나 그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로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제등록제도는 국민과 규제 상대방에게 규제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는 한편 규제총량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하는 동시에 정부 규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존 규제의 정비는 규제와에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2015년 규제개혁 평가 세부 추진계획”(2015년 11월 국조실)에 따라 등록규제 전수 대비 기존 규제 정비 실적이 평가지표 중 하나로 정해져 있으며, 규제비용 총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한 여건이라는 측면에서 규제의 등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점

신설·강화 규제 등록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2009년 “규제개혁 추진실태” 감사(2009. 11. 3. 시행)를 실시하여 구 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중앙행정기관의 신설·강화 규제 190건 중 111건이 미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신설·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사후관리하도록 국조실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은 2015년에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실태” 감사(2015. 11. 23. 시행)를 실시하여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신설·강화한 규제 중 141건이 미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두 기관에 주의를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신설·강화 규제의 미등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조실이 규제 신설·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규제 심사결과 자료¹⁾를 활용하여 규제 등록 여부를 파악·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국조실은 신설·강화 규제 심사결과와 등록규제 리스트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설·강화 규제의 미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규제위의 심사를 받아 신설·강화된 국토부 등 5개 부처²⁾의 규제 1,894건에 대해 등록 여부를 점검하였다.

점검 결과, 2014년 규제위의 심사를 받아 신설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431건(22.8%)이 [표 37]과 같이 규제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³⁾ 규제위의 심사를 거친 신설·강화 규제가 미등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토부 등 5개 부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규제등록을 통해 국민 및 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규제의 질적 관리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록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등록 누락으로 인해 규제완화 등 기존 규제 정비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관제기관 의견 국조실은 신설·강화 규제의 심사 및 등록 누락을 막기 위해 심사지원시스템과 규제등록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친 신설·강화 규제의 등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심사정보를 규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신설·강화 규제 미등록 사례(2013~2015년)					
■(국토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등 4개 조항이 2014. 11. 24. 규제위의 심사를 받았으나 규제 등록 누락					
■(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감염병 환자 등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통신·카드회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규제는 2015. 12. 11. 규제위의 심사를 받았으나 규제 등록 누락					

[표 37] 신설·강화 규제 미등록 현황(2013~2015년)

구분	개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신설·강화 규제 수(A)	1,894	945	101	244	300	304
미등록 규제 건수(B)	431	293	25	45	45	23
미등록 규제 비율(B/A)	22.8	31.0	24.8	18.4	15.0	7.6

- 1) 규제위 심사 결과자료는 규제정보시스템 내 심사지원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고, 규제 등록은 규제정보시스템 내 규제등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
- 2) 국토부, 문체부, 복지부, 산업부, 식약처
- 3) 감사원, 감사기간 중 확인한 미등록 규제를 소관 부처에 통보한 결과 각 부처는 미등록 규제를 '감사기간 중 등록' 조치함

감사보고서

제 목 네거티브 규제개선 추진 및 이행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적정 운영 방법

네거티브 규제 개선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더 크고 사전 규제의 완화로 인한 부작용이 적은 분야에 적용하고, 특히 국민의 건강·생명·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는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도 2013. 5. 14. 국무회의에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 사항을 보고하면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감독강화 등 보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에 따르면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경우’와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등 2가 유형으로 구분하여 2013년에 153건, 2014년 이후 180건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추진일정에 따른 실책을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추진할 때 국민의 건강·생명·안전 등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보다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투자 관련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각 소관 부처가 계획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지 이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이와 관련하여 국조실이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추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2013년 실적 152건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 실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를 점검하였다.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 부적정

우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야의 규제에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일례로, 담배는 국민 건강·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사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그런데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담뱃갑 포장지의 인쇄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였다.

한편, 2015. 6. 22.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담뱃갑 포장지 등에 경고문구 뿐만 아니라 경고그림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담배의 제조자·수입판매

업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유사 사례

■ 소방시설 설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정 수준의 사전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 곧 한데도	
- 국조설은 소방시설 설치 대상을 정하고 있는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별표 1」의 규정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되겠다는 계획을 추진 - 한편, 2013. 11.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난유도선(1)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영화상영관, 복합영상클럽·공연 영업장 등이 추가되어 규제가 강화	

(2)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이행 관리 부작정

그리고 2013년 실적 152건을 대상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표 41]과 같은 판단기준을 정하여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41]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판단기준

유형		예시
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지적요건을 폐지하거나 결격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경제활동 영역 중 제한되는 영역을 규정하는 경우 등 - 인허가·승인·지정 등의 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등	②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규제를 시장적 규제로 전환하는 경우 - 인허가·승인·신고 등 시전규제를 폐지하는 경우 - 사업·경제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경우 등
③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높은 일반적인 규제와 함께 이거나 일부 규제로 개선	- 일반적인 규제원칙·합리화· 규제강화 등	- 법령·행정규칙 등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무산된 경우 - 기사례 등의 사유로 별도의 기준조치 없이 기존 조항이 유지된 경우 - 규정·총의 단순정비 등
④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분석 결과, [표 42]와 같이 전송망사업2) 등록요건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한 「방송법」 제9조 제10항의 개정 등 35건(23%, 유형①과 ②의 합

- 1) 행정·전동률·전류 등에 의하여 빛을 내는 유도체로서 유사 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 및 시설
- 2) 방송 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으로부터 시청자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유·무선 전송·신호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계)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었거나 또는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규제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실질적인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결과

유형	대표 사례	건수 비율
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방송법」 제9조 제10항의 전송망사업 등록요건을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	18 11.8
② 네거티브 전환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규제 개선	「우편법」 제2조의2의 규정을 삭제하여 소규모 사신송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17 11.2
③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부 규제 개선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삼 경작에 관한 신고 절차를 확대	100 65.8
④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소방시설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규정을 정비	17 11.2
합계		152 100.0

주: 유형 ④로 분류된 17건 중 8건은 과제 선정 당시부터 규제 개선으로 볼 수 없는 과제를 선정한 것이고, 나머지 9건은 개선추진 중 무산된 건 등임
자료: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나머지 117건은 인삼 경작에 관한 신고 접수·수리 기관을 기준으로 인삼조합에서 시장·군수·구 청장 등까지 확대하도록 「인삼산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개정한 사례와 같이 네거티브 규제방식과의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 규제 개선(100건, 65.8%)이거나, 법령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정하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을 정비한 사례와 같이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17건, 11.2%)에 해당하였다.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주요 사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제3호의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요건 중 하나를 ‘법’인 인원 중 피선선고를 받고 특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처산자| 없을 것’으로 법인 인원 중 피선선고를 받고 특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없을 것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적으로 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에서 정하고 있던 소방기술 관련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4의 2]에서 정하도록 단순히 규정을 정비하면서 이를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실적으로 판리

○와 같이 2013년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실적으로 관리하는 152건 중 117건(77.0%)은 네거티브 규제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데 국조실은 “2013년 규제개혁백서”에 네거티브규제 확대방안에 따라 2013년 153건의 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거나 네거티브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국조실은 2014년 이후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180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현 법체계하에서 위 확대방안을 실현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실적을 접계·관리하지 않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의 적정성, 실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제 활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기술·신제품 등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네거티브 규제 개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국조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생명·안전 등 사회

적·공익적 규제 분야를 제외하고 기술 속도가 빠른 신산업 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에 대한 이해·접점을 강화겠다고 협약하였다. 다만, 일부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①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이 부적정하였다는 사항 관련 국조실은 2013년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은 특정한 사항을 열거하여 제한적으로 금지시키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입법양식과 상관 없이 네거티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 의미로 파악하여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대상과제 선정이 적정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성과를 분석하면서 실질적 의미에서 네거티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제 완화를 모두 네거티브 규제 개선 추진실적으로 인정하였고, 이외 네거티브 방식과의 관련성이 낮거나 규제 개선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를 선별하여 대상과제 선정이 부적정하였다고 지적하는 것임으로 위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②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의 이해관리가 부적정하였다는 사항 관련 국조실은 2014년에 개선 또는 중장기검토하기로 한 180건에 대한 이행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익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다만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당시 법체계하에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4년에는 사실상 ‘경제규제 10% 감축’으로 대체하였고, 2015년부터는 규제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을 추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은 ‘금지 사항을 법령상 벌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서술 방식’으로 개념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규제 감축은 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고 규제의 질적 개선은 규제 수준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은 2013년 8월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과는 개념이 다르므로 네거티브 규제 확대방안에 대한 이행관리를 할 수 없었던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국무조정실장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적용이 적절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개선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선 계획의 실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감사 보고서

제 목 규제일몰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국무조정실
관 계 기 관 국무조정실
내 용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¹⁾을 설정하도록 규제일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하는 [표 43]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938건의 제한형 일몰규제를 신사하여 이 중 36건을 폐지하고, 157건을 개선하는 한편, 745건(79.4%)의 규제는 존속하도록 허용하였다.

[표 43] 재검토형 일몰규제 실사 결과(2013~2015년)

(단위: 건)

연도	계	규제폐지	규제 개선			규제존속	(단위: 건)
			소재	일몰연장	일몰해제		
2013년	846	34	140	111	29	671	480
2015년	93	2	17	16	1	74	52
계	938	36	157	127	30	745	532
							213

주: 2014년은 재검토형 일몰규제 실사 실적이 없음

자료: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1) 규제의 심사 없이 일몰 규제의 재검토기한 연장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규제위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일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조실은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가 규제위의 심사 없이 재검토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소관 부처가 규제위에 재검토기한¹⁾ 도래한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원 감사기간 중 국토부, 문체부, 북부부 등 3개 부처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존속여부를 점토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위 3개 부처는 [표 44]와 같이 2009년과 2010년 국무총리 고시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되었거나 해당 법령에 재검토기한이 규정된 규제²⁾ 61건을 당초 설정된 재검토기한이 도래했음에도 규제위에 심사 요청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조실은 규제 소관 부처가 규제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표 44] 규제위의 일몰 규제 미심사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규제폐지	규제 개선			규제존속	(단위: 건)
			소재	일몰연장	일몰해제		
2013년	846	34	140	111	29	671	480
2015년	93	2	17	16	1	74	52
계	938	36	157	127	30	745	532
							213

¹⁾ 일정 기간마다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설정되는 재검토기한
²⁾ 2013. 7. 16. 「행정규제기본법」에 재검토형 일률 유형을 규정하기 이전에도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해당 규제 법령에 재검토기한을 명시한 경우가 있었다

구분	건수	내포시례
계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7호의 「건설현 등을 기준 중 기본금 범위」 구체는 재검토로 기한이 2013. 12. 31.이었으나 재검토(구제부 심사) 없이 준지.
국토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공전용부지 시장구획」제4조의 「관공전용부지 설립의 자격 요건」 구체는 재검토기한이 2012. 12. 31.이었으나 재검토(구제부 심사) 없이 준지.
문체부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법 시행규칙」 제 6조의2의 「적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구체는 재검토기한이 2013. 12. 31.이었으나 재검토(구제부 심사) 없이 준지.
복지부	2	

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일례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부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그런데 북지부는 체점토기한 6개월 전까지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다 - 2013년 11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행정구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체점토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 마련하면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체 2014. 1. 1. 개정령(안)’⁽³⁾을

[7]한 예자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복지부가 2013년 11월 국조실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체계
기한 규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령(안)”의 규제 심사를 요청하자 국조실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파악하고, 일몰 규제의 심사 대상 여부는
국조실·강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만 파악하고, 일몰 규제의 심사 대상 여부는

[악하거] 않은 체 2013. 12. 12. 위 일부개정령(안)에 규제입사 대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발급하여 결국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규제는 규제없이 재점토기한이 연장되었다.

재검토형 일몰 규제 검토서 분석 내용

■ 자질토성 일률 규칙 검토서의 충실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표 45]와 같이 평가

구체 도입 상황의 변화, 구체의 적절성, 구체의 운용실적, 일률 설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구체에 대한 이해관

이 목 국체yle 대학 신학는 불교의 원형에 서 신식

지표를 미련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다.

[표 45]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 평가 지표

항목	세부 내용	
규제도입 상황의 변화	규제도입 상황 변화로 서술의 여부	상용변화 서술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구체성
규제의 적절성	규제내용의 서술 여부	규제내용 서술의 적절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규제의 운용실적	규제운용실적 서술 여부	규제운용실적 제시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일률설정 유지 필요성	일률설정 유지필요성 서술 여부	유지필요성 서술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여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서술의 적정성 사용된 자료의 근거(출처)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 항목별로 1점(매우 부적정)에서 5점(매우 적정)까지 점수 부여
- 항목을 누락한 채 미기재 한 경우 1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고, 관련 내용이 서술되어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3점 이상을 부여하여 평가

분석 결과, [표 46] 및 [별표 7]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와 같이 47건(90.4%)은 평가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났고, 전체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의 평균점수는 2.3점(5점 만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

평가항목	규제도입 상황의 변화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	일률설정 유지 필요성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전체 평균
평균 점수	2.3	2.4	2.2	2.8	1.8	2.3
누락 건수	5	8	15	4	19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및 국조실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필수 기재항목을 누락한 채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를 작성한 경우 우도 있었는데 ‘이해관계자 의견’을 작성하지 않은 일을 규제가 19건, ‘규제의 운용실적’을 작성하지 않은 일을 규제가 15건이었다.

그리고 아래 사례와 같이 하나의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국토부 ‘산업일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산업단지 지정 요청’ 규제 검토서 작성 내용

■ 재검토 결과: 규제 유지

- ① 당초 규제를 도입하게 된 상황의 변화 여부
 - 산업단지 신규지정이 2011년부터 연평균 수요(14.7㎢) 내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분양도 안정 추세로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 유지
 - ② 일률 설정을 계속 유지시킬 필요성
 -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제한)는 계속 유지하되 여전 변화 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기한 설정 불필요
- ※ 규제의 적절성, 규제의 운용실적,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등 3개 항목 누락
- 부처 검토의견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실수요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산단지 지정 요청 민간기업 범위 제한 필요

관계기관 의견 국조실은 일을 규제 심사가 누락되지 않고 재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검토형 법률 규제 검토서 평가 결과

(단위: 점, %)

[별표 7]

연번	소관 부처	규정 명	구체 내용	평균	연번	소관 부처	규정 명	구체 내용	평균
1	국토부	「지역균형개발 및 자발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원도시수유지에 대한 양도	1.1	30	법무부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3
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조성 등	1.1	31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3	"	「지역균형개발 및 자발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0주자의 취업	1.3	32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3.1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1.3	33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3.1
5	"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등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1.4	34	"	「도시개발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도시개발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3
6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7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1.6	35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3.4
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7항	사업시행자 교체요건 구체화	1.6	36	"	국토계획법 제89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등	시기호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3.6
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66항	공정간접을 포함한 경우	1.6	37	"	국토계획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개별도면단구역	3.6
9	"	「택지개발촉진법」 제10조의3	의무임대율을 설정	1.7	38	"	「동·서·남북안 및 내륙전 방전 특별법」 제17조	건설공사계약 하한	3.4
10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2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1.7	39	문화체육관광부	「국토조성법」 제9조 제8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시기호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3.6
11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등	택지개발설계계획의 승인(변경승인)	1.7	40	"	「지방문화재보」 제4조의2, 제20조	공시임대료 관리의 사용금지	3.6
12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개발구역 지정	1.7	41	"	「관공전총법」 제21조	기업도시개발 협약 체결 시 사용	3.6
13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과태료 부과	1.7	42	"	「신문 등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토지의 적설 사용	3.6
14	"	「지역균형개발 및 자발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60조	국가별로 부과	1.9	43	"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승지투표권의 발매	2.4
1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1.9	44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4항 등	유사법령의 사용	2.4
16	"	「건축법」 제63조 등	온돌 및 난방설비의 시공	2	45	"	「경륜·경정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국토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4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로지경계 변경	2.1	46	"	「관공전총법」 제28조	국토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4
1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및 제32조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비율	2.1	47	"	「경륜·경정법」 제19조 등	경륜·경정법」 제19조 등	3.1
1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항	주택의 구조)은	2.1	48	"	「경륜·경정법」 제15조 등	경륜·경정법」 제15조 등	3.1
20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2.3	49	"	「경륜·경정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경륜·경정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3.4
2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2.3	5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4
22	"	「도시개발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도시기본시설의 시행방식	2.4	51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등	비디오물의 품질 등의 표지 의무	4
23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2.4	52	식약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44조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1.9
24	"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20조 ~ 제30조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4					
2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 제19조의5 제28호	지방이전 공급기관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협약	2.9					
26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27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법 제12조	3					
28	국토부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법 제8조	3					
29	"	「환경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3					

자료: 감사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검토결과

국무조정실장은

조치할 사항

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새 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가 규제가

혁위 원칙의 일률 규제 심사 대상에서 누락된 체 재검토기한이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 ② 각 규제 소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재검토형 일률 규제 검토서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적정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규제일률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